

#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12. 15.  
행정소방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1월 13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08년 11월 14일
3. 상 정 및 의 결 일 자  
제27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소방위원회(2008. 12. 8)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

##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곽임근)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개별법령 개정에 따라
- 징수사무가 추가 또는 삭제되었기 관계 법령과 부합하도록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 신규 : 600원 → 5,000원
  - 연장 : 3,000원(신설)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 : 80,000원 → 100,000원
- 종합병원 개설 변경허가 : 50,000원 → 40,000원

### 나. 개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정비

- 원천징수 공제증명 : 300원 → 삭제
-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 1,000원 → 삭제
- 소방시설 완비증명 : 600원 → 삭제

### 다. 개별법령 개정으로 사무위임·환수된 수수료 정비

-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당의 설치 허가증의 재교부 : 500원 → 삭제
-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 신고5,000원, 재교부 3,000원 → 삭제
- 공연자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 2,000원 → 삭제
- 공연자등록증 재교부 신청 : 300원 → 삭제
- 각본 등 심사 신청 : 1,000원 → 삭제
- 출판사, 인쇄소 등록 및 변경등록 : 500원 → 삭제
-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지정) 신청 : 20,000원 → 삭제
-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 등록(신고) : 5,000원 → 삭제
-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신고 : 20,000원 → 삭제
-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변경 신고 : 10,000원 → 삭제

- 비디오물·게임물 판매·대여업등록(지정)신청 : 2,000원  
→ 삭제
- 비디오물·게임물 판매·대여업등록사항 변경등록 :  
1,000원 → 삭제
-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 신고 : 10,000원 → 삭제
- 비료생산업 등록 : 30,000원 → 삭제
- 비료수입업 신고 : 20,000원 → 삭제
-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 10,000원 → 삭제
-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허가 : 5,000원  
→ 삭제
- 광역 단위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관련(신설)
  - 비행선 이용 허가 신청 : 1대 400,000원
  - 비행기·선박 양측면 허가 신청 : 1대 10,000원
  - 사업용 노선버스 양측면 허가 신청 : 1대 2,000원
  - 열차·전동차 양 측면 신고 신청 : 1량 2,000원
  - 비행선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 1대 200,000원
  - 비행기·선박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 1대 5,000원
  - 사업용 노선버스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 1대 1,000원
  - 열차·전동차 이용 광고내용 변경 신고 : 1량 1,000원

**라.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 납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 → 실적증명(공사, 물품, 용역)
- 중기저당권 설정 등록 및 이전등록 신청 → 건설기계저당권 설정 등록 및 이전등록 신청
- 중기저당권 변경 또는 말소 신청 → 건설기계저당권 변경 또는 말소 신청

###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전문위원 운영창)

#### 1.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안 별표 2)

-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수수료 조정
  - 신규 600원 → 5,000원, 연장 : 3,000원(신설)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 : 80,000원 → 100,000원
- 종합병원 개설 변경허가 : 50,000원 → 40,000원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10호, 2007. 10. 4 개정)에 맞도록 수수료 요율액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나.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 동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수료 요율액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2. 개별 법령에서 자체 수수료 부과규정이 있어 당해 규정 삭제(안 별표 2)

가. 원천징수 공제증명 : 300원 → 삭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0조의 개정으로 원천징수 공제 증명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근거가 삭제됨.

#### 【소득세법시행령】

- 제200조(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현행법령상 구체적인 수수료 규정이 없음)

나.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 1,000원 → 삭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수수료액)에 구체적으로 수수료 부과규정을 명시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56조 (수수료액) ①법 제7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12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30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개정일 : 2006. 6. 9)

다. 소방시설 완비증명 : 600원 → 삭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수수료 부과 규정을 마련함(※“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의 신청 서식상 수수료 없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1조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① “생략”  
②소방본부장 “중략” 별지 제7호 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이하 생략” (※ 개정일 : 2004. 5. 28)

라. 의견

- 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별 법령상 제증명 등 수수료에 관한 부과 규정이 명시되어 있거나, 수수료의 부과 근거가 삭제되는 등 관계 법령의 변화에 따른 당해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견은 없으나
- ② 관계법령의 이해나 개정된 사항에 대한 검토가 소홀한 것으로 기인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개별법령 개정으로 사무위임·환수된 수수료 정비(안 별표 2)**

가. 법령의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12종의 사무

- ①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당의 설치 허가증의 재교부 : 500원 → 삭제

**【장사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개정일 : 2000. 1. 12)

②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 신고 5,000원, 재교부 3,000원 → 삭제

**【공중위생관리법】**

- 제6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 ①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개정일 : 2007. 12. 14)

③ 출판사, 인쇄소 등록 및 변경등록 : 500원 → 삭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 제9조 (신고) ① 출판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출판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개정일 : 2007. 7. 19)

**【인쇄문화산업진흥법】**

- 제12조 (신고) 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개정(제정)일 : 2007. 7. 19)

④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지정) 신청 :

20,000원 → 삭제

⑤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고) : 5,000원 → 삭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58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①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제6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개정(제정)일 : 2006. 4. 28)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8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①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개정(제정)일 : 2006. 4. 28)

⑥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신고 : 20,000원 → 삭제

⑦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변경 신고 : 10,000원 → 삭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5조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①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26조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 개정(제정)일 : 2007. 1. 19)

⑧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 신고 : 10,000원 → 삭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개정(제정)일 : 1999. 1. 18)

⑨ 비료생산업 등록 : 30,000원 → 삭제

⑩ 비료수입업 신고 : 20,000원 → 삭제

**【비료관리법】**

- 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 ①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중 락” 등을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 ④비료생산업자는 등록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비료수입업의 신고) ①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개정일 : 2007. 8. 3)

- ⑪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 10,000원 → 삭제
- ⑫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허가 : 5,000원 → 삭제

**【소음진동규제법】**

- 제8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배출시설을 설치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중 락”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개정일 : 2004. 12. 31)

나. 법령의 개정에 의한 사무가 삭제된 3종의 사무

- ① 공연자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 2,000원 → 삭제
- ② 공연자등록증 재교부 신청 : 300원 → 삭제

③ 각본 등 심사 신청 : 1,000원 → 삭제

**【공연법】**

- 공연예술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공연활동에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개정함.
- 제3조 (공연자의 등록), 제4조 (등록증), 제5조 (등록증 재교부), 제14조의2 (각본 등 심의) 규정을 삭제함.

(※ 개정일 : 1999. 2. 8)

다. 법령의 폐지에 의한 폐지된 2종의 사무

① 비디오물·게임물 판매·대여업등록(지정)신청 : 2,000원 → 삭제

② 비디오물·게임물 판매·대여업등록사항 변경등록 : 1,000원 → 삭제

· 수수료 부과 근거 법령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이 2006. 4. 28 폐지되어 존치 근거 없음.

※ 다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사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라. 법령의 개정으로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변경된 사무

① 광역단위 교통수단 이용 광고수수료 신설

○ 비행선 이용 허가 신청 : 1대 400,000원

○ 비행기·선박 양측면 허가 신청 : 1대 10,000원

- 사업용 노선버스 양측면 허가 신청 : 1대 2,000원
- 열차·전동차 양 측면 신고 신청 : 1량 2,000원
- 비행선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 1대 200,000원
- 비행기·선박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 1대 5,000원
- 사업용 노선버스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 1대 1,000원
- 열차·전동차 이용 광고내용 변경 신고 : 1량 1,000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 제3조의2 (광역단위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걸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 본사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를 걸쳐 운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일 : 2007. 12. 21)

마. 의 견

① 수수료 징수 근거가 되고 있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신고(등록) 또는 변경신고(등록) 사무가 시·도지사 사무에서 시장·군수의 사무로 변경되어 시장·군수가 부과 징수하게 되었거나, 수수료 규정이 삭제·폐지됨으로 도의 수수료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판단

되며

② 또한, 광역단위 교통수단 이용 광고수수료 신설은 2007. 12. 2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2개 이상 시·도 또는 시·군·구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허가 사무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시·도지로 변경되어 광역단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관련 수수료 8종을 신설하는 것으로 2008. 1. 11 행정안전부로부터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징수조례 표준안”에 의거 동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③ 다만, '99. 2. 8 「공연법」 · '99. 1.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기 일부는 제증명 등 수수료 부과에 관한 근거 법령이 수차례 개정·폐지되고, 동 조례를 2004. 8. 2일부터 2006. 12. 29일까지 3회에 걸쳐 개정을 하였음에도 동 수수료 규정을 폐지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관계 법령 개정 즉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4.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제2조가 개정됨에 따라

① 납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 → 실적증명(공사, 물품, 용역)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 제2조 (낙찰자 결정방법 등의 공고)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공사, 물품 및 용역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예정일, 입찰 참가자격, 시공경험 평가기준, 기타 구체적인 사항 등을 입찰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 개정일 : 2008. 3. 11)

나. 「중기저당법」이 「건설기계저당법」으로 법령 자구가 개정됨에 따라

- ① 중기저당권 설정 등록 및 이전등록 신청 → 건설기계저당권 설정 등록 및 이전등록 신청
- ② 중기저당권 변경 또는 말소 신청 → 건설기계저당권 변경 또는 말소 신청

다. 이는 관계 법규정의 개정으로 조례 수수료 부과 규정을 명확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종합의견**

-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수수료 규정을 신설, 변경, 삭제 등에 따른 수수료 징수대상과 금액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 안 별표 2 중에서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공유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등 3종 수수료 요율액을 조정하였으며

- 동안 정비가 소홀하여 조례상 존치하고 있던 개별법령에 수수료 정한 사무 3종,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12종, 법령 개정에 의한 삭제 사무 3종, 법령폐지에 의한 폐지사무 2종 등 총 17종을 수수료 징수대상에서 일괄 삭제하였음.

-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2개 이상 시·도 또는 시·군·구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허가사무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시·도지로 변경되어 광역단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관련 수수료 8종을 신설하는 것이며

- 그밖에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명확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 이는 같은 사안의 제증명 등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 다만, 관계법령이 개정·폐지되었음에도 동 조례안 즉시 개정하지 않고 지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별표 2]

##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2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b>1. 증명</b>				
가.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300	
2)	하자보증금 납부 증명	1통	300	
3)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1통	300	
4)	실적증명(공사, 물품, 용역)	1통	300	
나. 기타 제증명				
1)	화재증명	1통	600	
2)	원자재소요량 증명			
가)	가소요량	1통	3,500	
나)	확정소요량	1통	1,200	
3)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300	
<b>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시설확인 등</b>				
가.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1건	신규5,000 계속3,000	지방자치법 제138조제 1항
2)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	1건	계속350	
3)	기타 각종 인가, 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100	
나.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신고 및 변경신청	1건	1,000	전기사업법 제62조, 제98조
2)	석유판매업(일반·용제대리점) 등록 신청	1건	30,000	석유및석유 대체연료사업 법 제41조
3)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 신청	1건	20,000	
4)	승강기보수업 등록 신청	1건	50,000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
5)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	
6)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20,000	
7)	전기공사업의 등록 신청	1건	40,000	전기공사업법 제35조
8)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1건	30,000	
9)	전기공사업의 승계(양수·상속·합병) 신고			
가)	양도·양수 또는 법인 합병 신고	1건	30,000	
나)	상속 신고	1건	5,000	
10)	전기공사업의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			
가)	승계(양수·상속·합병) 신고	1건	5,000	
나)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의 부족에 따른 재교부	1건	5,000	
※ (8), (9)는 공사업자단체가 현금으로 징수				

11)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등록·양도·양수·합병) 신청 등			전력기술관리법 제26조
가) 종합 설계업 등록 신청	1건	50,000	
나) 종합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45,000	
다) 전문1종 설계업 등록 신청	1건	30,000	
라) 전문1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25,000	
마) 전문2종 설계업 등록 신청	1건	20,000	
바) 전문2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15,000	
사) 종합 감리업 등록 신청	1건	50,000	
아) 종합 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45,000	
자) 전문 감리업 등록 신청	1건	30,000	
차) 전문 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25,000	
12)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 변경등록 신고			
가) 변경등록(상호·소재지·대표자·기술인력)	1건	5,000	
나) 등록증 재발급	1건	5,000	
다. 건설관계			
1) 건설기계저당권 설정등록 및 이전등록 신청	1건	1,200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 제2조, 제5조
2) 건설기계저당권 변경 또는 말소 신청	1건	1,200	
라. 보건사회위생관계			
1) 마약판매서 및 구입용지 교부 신청	1매	50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20조
2) 종합병원개설허가	1건	100,000	의료법 제33조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개설 허가	1건	100,000	
4) 종합병원개설 변경허가	1건	40,000	
5)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개설 변경허가	1건	40,000	
마. 문화공보관계			
1) 종합게임장업등록(지정) 신청	1건	20,000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6조
2)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1건	20,000	
3)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 변경 신고	1건	10,000	
4)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신고	1건	20,000	
5)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 신고	1건	10,000	
바. 체육시설업 관계			
1) 골프장, 스키장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1건	200,00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9조
2) 골프장,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1건	60,000	
3) 골프장, 스키장업 등록 신청	1건	100,000	

4) 골프장,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40,000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29조
5)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1건	100,000	
6)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1건	40,000	
7)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등록 신청	1건	60,000	
8)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	
사. 자격시험 관련			
1)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응시원서 교부 신청	1건	5,000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1조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1건	500	
3)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1건	3,00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조
아. 교통관계			
1)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 신고	1대	1,400	화물자동차운수업법시행규칙 제48, 50, 52조
2)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 또는 임대허가 신청	1대	1,400	
자. 광역단위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관련			
1) 비행선 이용 허가 신청	1대	400,000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의2
2) 비행기·선박 양측면 허가 신청	1대	10,000	
3) 사업용 노선버스 양측면 허가 신청	1대	2,000	
4) 열차·전동차 양 측면 신고 신청	1량	2,000	
5) 비행선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1대	200,000	
6) 비행기·선박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1대	5,000	
7) 사업용 노선버스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1대	1,000	
8) 열차·전동차 이용 광고내용 변경 신고	1량	1,000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단위:원)			[별표2]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단위 원)		
구 분	기준	요액	수 수 료 명	기준	금액
1. 증명			1. 증명		
가. 회계에 관한 증명			가. 회계에 관한 증명		
(1),(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300	3) 삭제		
(4)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1통	300	4) 실적증명(공사, 물품, 용역)	1통	300
(5) <생략>			5) <현행과 같음>		
나.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나. 삭제		
(1)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1통	1,000	1) 삭제		
다. 기타 제증명			나. 기타 제증명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시설 완비증명	1통	600	2) 삭제		
(3),(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 시설확인 등			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 시설확인 등		
가. 일반행정관계			가. 일반행정관계		
(1)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1건	신규600	1)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2),(3) <생략>			- 신규	1건	5,000
나.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생략>			- 연장	1건	3,000
다. 건설관계			2), 3) <현행과 같음>		
(1) 중기저당권 설정등록 및 이전등록 신청	1건	1,200	나.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현행과 같음>		
(2) 중기저당권 변경 또는 말소신청	1건	1,200	다. 건설관계		
라. 보건사회위생관계			(1) 건설기계저당권 설정등록 및 이전등록 신청	1건	1,200
(1) <생략>			(2) 건설기계저당권 변경 또는 말소신청	1건	1,200
(2) 시설모지시설회장장 및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증의 재교부	1건	500	라. 보건사회위생관계		
(3)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1건	신규5,000 재교부3,000	1) <현행과 같음>		
(4) <생략>			2) 삭제		
(5)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개설허가	1건	80,000	3) 삭제		
(6) 종합병원개설 변경허가	1건	50,000	4) <현행과 같음>		
(7) <생략>			5)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개설허가	1건	100,000
마. 문화 공보관계			6) 종합병원개설 변경허가	1건	40,000
(1) 공연자등록 및 변경등록	1건	2,000	7) <현행과 같음>		
(2) 공연자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300	마. 문화 공보관계		
(3) 각본등 심사신청	1건	1,000	1) 삭제		
			2) 삭제		
			3) 삭제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액	수 수 료 명	기준	금액
(4) 출판사, 인쇄소등록 및 변경등록	1건	500	4) 삭제		
(5) 비디오물·게임물 판매·대여업 등록(지정) 신청	1건	2,000	5) 삭제		
(6) 비디오물·게임물 판매·대여업 등록사항 변경 등록	1건	1,000	6) 삭제		
(7) 시청제공업·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등록(지정) 신청	1건	20,000	7) 삭제		
(8) 시청제공업·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고)	1건	5,000	8) 삭제		
(9) <생략>			9) <현행과 같음>		
(10)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신고	1건	20,000	10) 삭제		
(11)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11) 삭제		
(12)~(15) <생략>			12)~ 15) <현행과 같음>		
바. 체육시설업 관계			바. 체육시설업 관계		
(1)~(8) <생략>			1)~8) <현행과 같음>		
(9)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1건	10,000	9) 삭제		
사. 자격시험 관련 <생략>			사. 자격시험 관련 <현행과 같음>		
아. 농수산 관계			아. 삭제		
(1)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1) 삭제		
(2)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2) 삭제		
자. 교통관계 <생략>			아. 교통관계 <현행과 같음>		
차. 환경관계			차. 삭제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1건	10,000	1) 삭제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1건	5,000	2) 삭제		
<신설>			자. 광역단위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관련	1대	400,000
			1) 비행선 이용 허가신청	1대	10,000
			2) 비행기·선박 양측면 허가신청	1대	2,000
			3) 사업용 노선버스 양측면 허가신청	1량	2,000
			4) 열차·전동차 양측면 허가신청	1대	200,000
			5) 비행선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1대	5,000
			6) 비행기·선박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1대	1,000
			7) 사업용 노선버스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1량	1,000
			8) 열차·전동차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 관계 법령 발췌

## □ 개정 수수료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4>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관련 민원사무명〉

- 2-가-(1)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신규)
- 2-가-(1)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연장)
- 2-라-(4,5)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
- 2-라-(6,7)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 변경허가

[별표] &lt;개정 2007.10.4&gt;

##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 관련)

종 류	금 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 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주택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 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주택당 800원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	1건당 8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수수료	1건당 5,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수수료	1건당 3,000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1통당 1,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수수료	1건당 20,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수수료	1건당 30,000원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수수료	1건당 40,000원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수수료	1건당 20,000원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수수료	1건당 100,000원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고수수료	1건당 4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 시설업 신고수수료	1건당 3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 시설업 변경신고수수료	1건당 10,000원

## □ 삭제 수수료 관련 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200조(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이하생략)

②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관련 민원사무명〉

- 1-가-(3) 원천징수 공제증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제156조 (수수료액)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12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30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의 수입증지(영 제17조 제2항 또는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무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군 또는 구의 수입증지를 말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관련 민원사무명〉

- 1-나-(1)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 [별표 30]

## 수수료(제156조 제1항 관련)

납 부 자	금 액
1.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	
가.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1건에 대하여 3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당 1천원을 합산한다.
나. 등록원부의 열람	1건에 대하여 1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열람하는 경우에는 1건당 800원을 합산한다.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	1대에 대하여 2천원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동일 시·도안의 주소변경을 제외한다)	1대에 대하여 1천300원
4.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자	1대에 대하여 1천원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자	1건에 대하여 1천원
6. 법 제 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1건에 대하여 700원. 다만, 자동차등록증에 변경사항의 기재란이 부족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건에 대하여 2만원
8.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1대에 대하여 1천800원
9. 및 10 <삭제>	
11.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건에 대하여 2만원
1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건에 대하여 2만원
13.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건에 대하여 2만원
14.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제 95조제 1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수리검정에 한한다)을 신청하는 자	1대에 대하여 3천원
15. 16. <삭제>	
17.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자	
가. 등록	1건에 대하여 2만원
나. 변경등록	1건에 대하여 1만3천100원
18.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신고를 하는 자	1건에 대하여 1만2천원
19.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합병 신고를 하는 자	1건에 대하여 1만2천원
20.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장개설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건에 대하여 2만원
21.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가. 전산자료의 이용승인	1건에 대하여 1만원
나. 전산자료의 제공	1건에 대하여 300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에 대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때에도 또한 같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①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 제9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안전시설 등 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전시설등이 별표 2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관련 민원사무명〉

○ 1-다-(2) 소방시설 완비증명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관련 민원사무명〉

- 2-라-(2)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증의 재교부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관련 민원사무명〉  
○ 2-라-(3) 아·미용사 면허증 교부

### 【공 연 법】

제9조 (공연장의 등록) ①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 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객석수(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의 연면적)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06.9.27]

③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등록변경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공연자의 등록) 공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삭제 1999.2.8>

제4조 (등록증) 시·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에게 공연자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한다.<삭제 1999.2.8>

제5조 (등록증 재교부)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분실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등록증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삭제 1999.2.8>

제14조의2 (각본 등 심의) ①공연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각본 또는 대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삭제 1999.2.8>

〈관련 민원사무명〉

- 2-마-(1) 공연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 2-마-(2) 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 2-마-(3) 각본 등 심사신청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신고) ①출판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출판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관련 민원사무명〉

- 2-마-(4) 출판사 등록 및 변경등록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 (신고) ①「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관련 민원사무명〉

- 2-마-(4) 인쇄소 등록 및 변경등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①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6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관련 민원사무명> —

- 2-마-(7) 시청제공업 등록(지정)신청
- 2-마-(8)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①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생 략 >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민원사무명〉

- 2-마-(7) 게임제공업 등록(지정)신청
- 2-마-(8) 게임제공업 등록사항변경등록(신고)
- 2-마-(10)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신고
- 2-마-(11)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변경신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관련 민원사무명〉

- 2-마-(7) 노래연습장업 등록(지정)신청
- 2-마-(8)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변경등록(신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 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 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

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관련 민원사무명〉

- 2-바-(9)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비료관리법】**

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 ①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 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료수입업의 신고) ①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민원사무명〉

- 2-아-(1) 비료생산업 등록
- 2-아-(2) 비료수입업 신고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련 민원사무명〉

- 2-차-(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 2-차-(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 개정수수료 관련 법령**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

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의2 (광역단위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걸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 본사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를 걸쳐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 민원사무명> —

- 2-자-(1) 비행선 이용 허가 신청
- 2-자-(2) 비행기·선박 양측면 허가 신청
- 2-자-(3) 사업용 노선버스 양측면 허가 신청
- 2-자-(4) 열차·전동차 양측면 신고 신청
- 2-자-(5) 비행선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 2-자-(6) 비행기·선박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 2-자-(7) 사업용 노선버스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 2-자-(8) 열차·전동차 이용 광고내용 변경허가

□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지구 수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

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제2조 (낙찰자 결정방법 등의 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공사, 물품 및 용역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제6호 내지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 입찰참가 자격, 시공경험평가 기준, 기타 구체적인 사항 등을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①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 중 공사, 물품 및 기술용역에 대한 적격 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각의 세부심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다.

#### 〈관련 민원사무명〉

- 1-가-(4) 실적증명(공사, 물품, 용역)

## 【건설기계저당법】

건설기계의 동산 신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이 법은 1961년 12월 23일 법률 제1855호에 의해 <중기저당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

그 뒤 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1호로 <건설기계저당법>이라고 법령 이름을 바꾸면서 1차 전문 개정 되었으며, 1997년 12월 23일 법률 7247호로 2차 개정 되었음.